이제는 세테크 시대! 軍 연말정산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 저소득자에게 유리…교육·의료비 꼼꼼히 챙겨야




**국군재정관리단과 함께 알아보는 경제상식**

1. 군의 연말정산 결과 분석
2. 공제항목별 준비사항(소득공제)
3. **공제항목별 준비사항(세액공제) 및 참고사항**

1회와 2회를 통해 군인 및 군무원들이 받고 있는 주요 공제항목과 소득공제에 대해 알아보았다. 마지막으로 오늘은 세액공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세액공제란 근로소득자가 내야 할 세금에서 일부를 공제해 주는 것이다.

먼저 간단한 예를 통해 세액공제의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알아보자.

### 세액공제의 효과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연간 동일한 급여소득에 대해 최저세율인 6%를 적용받는 소득자 A와 B를 비교해 보았다.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를 받은 소득자 A는 60만5000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하고, 연금저축 세액공제를 받은 소득자 B는 11만7000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소득자 A와 B가 내야할 세금은 48만8000원의 차이가 난다. 이처럼 과세표준이 1200만 원(근로소득공제 고려 총급여 22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공제보다 세액공제가 납부세액을 줄이는 데 효과가 있다.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에서 직접 세금의 일부를 공제하기 때문에 과세표준액이 낮아 최저세율을 적용받는 저소득자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그럼 납부해야 할 세금에서 직접 공제되는 세액공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세액공제에는 무엇이 있으며, 어떻게 공략해야 할까?***

①연금저축으로 저축과 연말정산을 동시에!

연금저축의 경우 연 납입액 중 400만 원 한도 내에서 15%(총급여 5500만 원 이하인 자) 또는 12%(총급여 5500만 원 초과자)를 공제받는다. 연말정산 결과를 분석해보니 연말정산 대상 인원의 14%가 연금저축 세액공제를 받았는데, 장기적인 세테크 차원에서 고려해볼 만하다. 그러나 중도해지 시 세액공제 혜택보다 더 높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보다 세심한 접근이 필요하다.

• 세액공제의 효과



| 구분 | 소득자 A | 소득자 B | 비고 |
|---|---|---|---|
| 총급여 | 2200만 원 | 2200만 원 | |
| 근로소득공제 | (855만 원) | (855만 원) | |
| 근로소득금액 | 1345만 원 | 1345만 원 | |
| 인적공제 | (150만 원) | (150만 원) | |
| 주택청약저축(소득공제) | (96만 원) | - | 가정: 청약저축 400만 원 납입(240만 원 공제 한도의 40% 소득공제) |
| 과세표준 | 1009만 원 | 1195만 원 | |
| 세율 | 6% | 6% | |
| 산출세액 | 60.5만 원 | 71.7만 원 | |
| 연금저축(세액공제) | - | (60만 원) | 가정: 연금저축 400만 원 납입(15% 세액공제) |
| 결정세액 | 60.5만 원 | 11.7만 원 | 48.8만 원 차이 |

②가족들의 의료비까지 챙기자!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여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공제해주는 것으로,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은 초급간부에게 유리한 제도다. 연말정산 결과를 분석해보니 연말정산 대상자의 31%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았다. 의료비 세액공제의 경우 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에 해당하는 가족이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기본공제 대상자는 물론이고 소득이 있거나 나이가 20세를 초과하는 직계비속·형제자매가 지출한 의료비도 세액공제가 가능하다는 것을 명심해야겠다.

③교육비 세액공제

본인 및 가족(직계존속은 제외)의 교육비 지출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연말정산 결과를 분석해보니 연말정산 대상자의 35%가 공제를 받았다. 교육비 세액공제는 본인교육비 지출액 전액, 초·중·고생은 1명당 연 300만원, 대학생은 1명당 연 900만원 한도 내에서 15%가 반영되므로 공제 요건에 맞는 대상자를 확인해야한다. 유의해야 할 사항은 '국비지원교육비'다. 군인·군무원 본인의 학비 가운데 군에서 지원받은 국비지원 교육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교육비 세액공제에 반영해서는 안 된다.

④기부금 세액공제

군인 및 군무원이 세액공제 받는 기부금은 법정기부금(국방헌금, 국군장병 위문금품 등)과 지정기부금(사회복지단체 기부금, 종교단체 기부금 등)이 대부분이다. 본인 및 기본공제 대상자가 기부한 금액에 대하여 15%(3000만 원 초과분 3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법정기부금의 세액공제 한도는 근로소득금액까지이며, 지정기부금의 세액공제 한도는 근로소득금액에서 법정기부금을 제외한 금액의 30%까지다. 또한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은 5년간 이월해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당해 연도 세액공제 한도를 초과하더라도 다음해에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역자(퇴직자) 정산**

연중 전역자의 경우에는 전역하는 달에 제반 공제자료를 제출해 중도퇴직자 정산을 하고 있다. 그러나 국세청 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어 대부분 인적공제·건강보험료공제 정도만으로 정산을 하므로, 퇴직 시에 제반 공제자료를 제출해 정확한 정산을 받아야 한다. 또한 전역한 당해 연도에 재취업한 경우에는 군에서 정산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재취업한 회사에 제출해 정확한 연말정산을 받아야한다. 전역 후에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인 5월 말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재취업한 회사에서 정산할 때 이전 근무지 소득을 합산하지 않았거나,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근로소득 외의 소득을 근로소득과 합산해 신고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마지막 한마디

소득세 연말정산은 1년간 소득에 대해 개인이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결정하는 것이다. 개인이 얼마나 전략을 잘 세우고 준비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많이 달라질 수 있다. 지금까지 연재한 연말정산 관련 내용이 2015년도 소득세 연말정산 시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앞으로도 국군재정관리단은 전 장병의 급여복지 향상을 위해 더욱 더 노력할 것이다. ▮ 편집=신연식 기자